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30분 ~ 11시30분
2. 장 소 : 비대면 회의(ZOOM)(코로나 19 감염차단 목적) 진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50(2020.03.12.) 근거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 지 일 : 2021년 3월 3일(수)
 - 통지대상 : 이사 10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의 재 수탁 신청 및 관장 선임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변경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4. 출석임원 : 박성경, 이광일, 정순돌, 김광영, 장광규, 임은경, 손병덕, 최동주, 최미경(이사 9명)
이천화, 이창구(감사 2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광일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10명 중 9명(박성경, 이광일, 정순돌, 김광영, 장광규, 임은경, 손병덕, 최동주, 최미경), 감사 2명 중 2명(이천화, 이창구)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박성경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이광일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안건보고 및 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의 재 수탁 신청 및 관장 선임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 수탁신청 및 관장 선임의 건에 대해 설명하다.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우리 재단이 2007년 5월 진도군으로부터 수탁 받아 14년간(수탁 4기) 운영하며, 진도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이번 수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진도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위탁 형태로 진행됨을 추가 설명하다. 향후 수탁기간 5년간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지원금 총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법인 지원과 함께 현재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순 관장을 재선임해 주시길 요청하며, 앞으로도 진도군의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도군노인종합복지회관 수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이에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박성경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
치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변경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본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7조, 공
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인 정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제정 및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관 신규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6조(자산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 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 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 야 한다.</p> <p>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 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p>	<p>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 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거 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 야 한다.</p> <p>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 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 다.</p> <p>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 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 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 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p> <p>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p>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개시 <u>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u> <u>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u>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p>
<p>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u>2월 이내</u>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u>3월 이내</u>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p>
<p>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 제13조4항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없다.</p>	<p>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 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u>사회복지사업법</u>」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u>사회복지사업법</u>」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p>
<p>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u>1월 이내</u>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p>	<p>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u>2월 이내</u>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p>	<p>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임원의 보충)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p>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19조 (신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신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시이사의 해임)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생략)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생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변경
제20조(대표권의 제한) ...(생략)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생략)	
제21조(임원의 대우) ...(생략)	제23조(임원의 대우) ...(생략)	
제22조(겸직금지) ①...(생략)	제24조(겸직금지) ①...(생략)	
제23조(이사회 구성) ①...(생략)	제25조(이사회 구성) ①...(생략)	
제24조(의결사항) ...(생략)	제26조(의결사항) ...(생략)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	제27조(이사회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상이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p> <p>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u>14일 이내</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상이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p> <p>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u>20일 이내</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소집)</p>
<p>제26조(이사회 개의회 의결 정족수) ...<u>(생략)</u></p>	<p>제28조(이사회 개의회 의결 정족수) ...<u>(생략)</u></p>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변경</p>
<p>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p>제2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p>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표준정관 제29조 (의결제척 사유)</p>
<p>제28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의사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시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부 내용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다.)</p>	<p>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기명란에 자필 서명 후 일반 날인 또는 기명란에 기명 후 날인 부분에 자필 서명도 가능</p>	<p>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p>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단, 두 경우 모두 자필서명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p> <p>④ 의서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시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부 내용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삭제.</p>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생략)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생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변경
제30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생략)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생략)	
제31조(사무국) ①...(생략)	제33조(사무국) ①...(생략)	
제32조(직원) ①...(생략)	제34조(직원) ①...(생략)	
제33조(정관변경) ...(생략)	제35조(정관변경) ...(생략)	
제34조(해산 및 합병) ...(생략)	제36조(해산 및 합병) ...(생략)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생략)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생략)	
제36조(공고의 방법) ①...(생략)	제38조(공고의 방법) ①...(생략)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표준정관 제39조(준용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운영규정) ...생략	제40조(운영규정) ...생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변경

※ 정관 <표 1>

법인임원명단 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 정관 <표 1>

법인임원명단 변경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이사장은 박성경 이사의 임기가 2021년 5월 24일로 만료되므로 이사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광일 대표이사는 박성경 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정순돌이사가 동의하고 손병덕 이사가 동의재청하다. 이에 정관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본 건의 의결권이 없는 박성경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박성경 이사의 재선임을 승인가결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박성경은 이사장이 2021. 5. 24.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에 임은경 이사는 금일 이사로 재선임된 박성경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광일 대표이사가 동의하고 정순돌 이사가 동의재청하다. 이에 정관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본 건의 의결권이 없는 박성경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박성경 이사장의 재선임을 승인가결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 공개함.

의장은 이사(이사장) 선임에 따른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8.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최미경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임은경 이사가 재청하여 박성경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30분


2021년 3월 12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박성경(인)


대표이사 이 광 일 (인) 


이 사 정 순 들 (인) 


이 사 김 광 영 (인) 


이 사 장 광 규 (인) 

이 사 임 은 경 (인) 

이 사 손 병 덕 (인) 

이 사 최 동 주 (인) 

이 사 최 미 경 (인) 

감 사 이 천 화 (인) 

감 사 이 창 구 (인) 